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2 선고 2023가단2596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피고B

변론 종결2024. 8. 27.

판결 선고2024. 10.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10.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20. 10. 5. 접수 제795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주식회사는 C에게 12,5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약정이자율 연 12.9%, 연체이자율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을 2016. 5. 20.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는 C를 상대로 10,652,538원 및 그 중 7,349,702원에 대하여 2023.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23차전121061)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C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20. 10. 5. 접수 제79553호로 2020. 10. 5.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가 원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칙적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화연

별지